

 국토교통부	<h1>보도자료</h1>		 3년의 혁신, 30년의 성장
	배포일시	2016. 6. 28(수) 총 6매(본문2, 참고4)	
담당 부서 공항공안환경과	담당자	·과장 방윤석, 사무관 김춘수, 주무관 이주원 ·☎ (044)201-4347, 4342, 4341	
보도 일시	2016년 6월 29일(수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방송인터넷은 6. 29(수) 06:00 이후 보도 가능		

7월부터 “공항 주변지역 주민 지원·재산권 보호 확대”

- 냉방 전기료 지원, 손실보상료지매수 청구지역 확대 위한 공항소음방지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 -

- 국토교통부(장관 강호인)는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「공항소음방지법」을 지난해에 개정(15.12.31)하였고, 법률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(시행령, 시행규칙) 개정을 통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.
 - 이번 법률 개정은 공항주변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항공기 소음으로부터 주민 생활공간과 재산권 등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.
- 7.1일부터 달라지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 - 항공기 소음으로 창문개방이 곤란한 여름철(7~9월) 냉방시설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일반 주민까지 확대하여 지원(세대별 월 5만원)할 계획이며, 그 대상은 6만 세대 이상이 직접 혜택을 보게 된다.
 - 전기료 지원은 공항시설관리자(한국공항공사, 인천국제공항공사)가 주민 전출입 확인 등 개인정보 접근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하에 직접 시행하며, 많은 대상자가 거주하는 양천구와 제주시는 업무위탁 협약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다.

* (김포) 양천구·구로구·부천시·김포시·계양구, (김해) 강서구·김해시, (제주) 제주시, (울산) 북구·중구, (여수) 여주시, (인천) 중구, 옹진군

- 지원 절차는 대상자의 주소확인을 거쳐 신청서 발송·접수를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**전출입 자료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10월 이후에 일괄지원**하게 된다. 대상자 포함 여부는 공항공사가 운영하는 ‘**공항소음정보시스템(www.airportnoise.kr)**’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고, 공항공사 각 지사별로 마련한 안내창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.

○ 또한, 항공기 소음이 심한지역 내 **피해주민 감소와 재산권 보호** 위해 **손실보상·토지매수 청구 대상지역을 1종 지역(95웨클 이상)에서 ‘3종 가 지역’(85웨클 이상)까지 확대**하여 100여 가옥이 혜택을 받게 된다.

○ 그리고, 소음대책사업의 기초가 되는 **공항별 소음영향도 조사**를 국가(종전 공항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)가 **직접 시행***하여 조사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, **공항소음방지 중기계획 수립 시에 주민의 의견을 청취**하여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.

* 개정 법령에 따라 2016년 제주공항 소음영향도 조사부터 적용

□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항주변 주민들에게 **항공기 운항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**하며, 이번 법률 개정 사항이 **공항주변 주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**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.

□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소음대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, **기후변화·항공수요 등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**이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김춘수 사무관(☎ 044-201-434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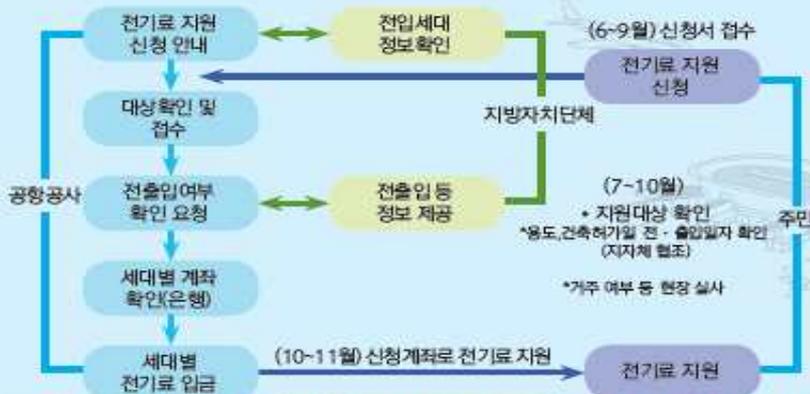
7월부터 “공항 주변지역 주민 냉방 전기료 확대지원”

국토교통부는 7월 1일부터 하절기 항공기 소음발생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대책 일환으로 「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한하여 하절기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사업을 확대 지원하게 됩니다.



- 항공기 소음으로 청문개방이 곤란한 여름철(7~9월) 냉방시설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일반 주민까지 확대하여 지원(세대별 월 5만원)할 계획이며, 그 대상은 6만 세대 이상이 직접 혜택을 보게 됩니다.
- 전기료 지원은 공항시설관리자가 주민 전출입 확인 등 개인정보 접근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하여 직접 시행하며, 많은 대상자가 거주하는 양천구와 제주시는 업무위탁 협약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게 됩니다.
 - (김포) 양천구·구로구·부천시·김포시·계양구, (김해) 강서구·김해시, (제주) 제주시, (울산) 북구·중구, (여수) 여수시, (인천) 북도면
- 지원 절차는 대상자의 주소확인을 거쳐 신청서 발송·접수를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전출입 자료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10월 이후에 일괄지원하게 됩니다. 대상자 포함 여부는 '공항소음정보시스템(www.airportnoise.kr)'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고, 공항공사 각 지사별로 마련한 안내창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✎ 전기료 지원 절차 및 대상



※ '16년 전기료 지원은 실 거주확인 행정소요기간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10~11월 일괄지급예정이나 '17년부터 상시입정 및 절차는 일부 변동될 수 있음.

✎ 공항별 연락처

공항명	담당부서	연락처
김포공항	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환경관리팀	02) 2660 - 2456 ~ 2460
김해공항	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건축설비팀	051) 974 - 3358
제주공항	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건축설비팀	064) 797 - 2898
울산공항	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 시설팀	052) 219 - 6380
여수공항	한국공항공사 여수지사 시설팀	061) 689 - 6338

□ 총 13개 지방자치단체(김포 5, 김해 2, 제주 1, 울산 2, 여수 1, 인천 2)

공 항	총계	김 포					김 해		제 주	울 산		여 수	인천
		양천구	구로구	부천시	김포시	인천계양	강서구	김해시	제주시	북구청	중구청	여수시	중구, 옹진군
사업량 (세대)	63,066	36,557	10,256	5,696	3,769	114	869	54	5,553	47	98	3	50

저희 한국공항공사에서는 하절기 항공기 소음발생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대책 일환으로 「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한하여 하절기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사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.

주민주거용 시설 하절기 냉방시설 전기료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공항공사 ○○지역본부(○○지사)에 우편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신청 대상 및 계획

○ 주택냉방시설 전기료 신청대상

○○공항 소음대책지역(75웨클이상) 내 주거용 시설에 한하여 전기료 일부를 한국공항공사에서 지원합니다.

○ 주택냉방시설 전기료 지원금액

주택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을 신청하시면 하절기(7월~9월) 3개월간 월 5만원 씩 총 15만원을 일괄지급 예정입니다.

□ 신청기한 및 방법

○ 신청기한 : 000년 00월 00일

○ 신청방법 : 신청서 작성 후 첨부서류(신청인의 은행계좌 사본)를 우편 또는 이메일(각 지사별 이메일 (예) kac01@airport.co.kr), 공항별 지사방문 접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.

○ 안내문의 전화 : 지역번호) ○○○○ - ○○○○

참고 3

전기료 지원 신청서(예)

작성 시 유의사항

1. 전기료 신청대상은 소음대책지역에 위치하고, 전입한 세대 중 우리 공사에서 지원 대상을 확정한 주민주거용 시설 거주자에 한하여 지원하며, 지원 대상자가 아닐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.
 2. 전기료 지원을 신청하시면 세대주 본인 명의 은행계좌로 전기료(7~9월)를 5만원 씩 총 3개월 비용을 10월 이후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.
 3. 전출입 여부에 따라 전기료는 아래와 같이 일할 계산되어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.
(예) 8월 22일 전출일 경우: 전기료(원) = 50,000원(7월 전기료) + 22(살거주일)÷31(8월 알수) × 50,000원 = 85,480원
 4. 필수기재사항은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하며, 세대주 본인 계좌 이외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.
- ※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환수조치 될 수 있으므로 필수기재사항을 거짓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개인정보보호 안내

■ 귀하는 한국공항공사의 전기료 지원을 신청 및 소음대책사업 안내를 위해, 아래와 같이 최소한의 항목들에 대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? **동의함** **동의하지 않음**

▶ 동의 시 필수 고지사항

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

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 : 소음대책지역 전기료 지원 및 소음대책사업 안내
2.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: 주소, 성명, 연락처, 계좌정보(은행명, 계좌번호, 예금주)
3.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: 지원년도 기준 00년
4. 거부권 및 불이익 : 동의를 거부할 시 전기료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

■ 필수 정보에 대한 수집은 전기료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됨을 알려드리며,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도래 이후의 정보는 전량 파기됩니다.

■ 귀하는 한국공항공사의 전기료 지원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? **동의함** **동의하지 않음**

▶ 동의 시 필수 고지사항

제3자 개인정보 제공

1. 제공받는 자 : 00은행, 지원세대 관할 지방자치단체
2. 목적 : 불능계좌 확인 및 전기료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확인
3. 항목 : 예금주, 은행명, 계좌번호
4. 보유 및 이용기간 : 전기료 지원 후 즉시 파기
5. 거부권 및 불이익 : 전기료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

필수 기재 사항

지원대상 세대주소		구주소			
		신주소			
성명(세대주)				건축물용도	
연락처	휴대폰			예) 단독, 아파트	
	자택			주거시설 거주여부	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 <input type="checkbox"/>
세대주 계좌정보 (정확히 기재)		예금주		계좌번호	
		은행명			

상기와 같이 하절기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인)

한국공항공사 ○○지역본부장(지사장) 귀하

참고 4

손실보상 및 토지매수청구 대상 현황 등

□ 공항별 제2종 및 제3종 “가”지구 가옥 현황

공항	김포	김해	제주	여수	울산	인천	합계
기옥수(호)	6	30	72	-	-	-	108

□ 공항별 소음대책지역 지정·고시 현황

공항별 (최근 지정고시일)	사업대상			
	구역	면적(km ²)	가옥수(호)	
합계	제1종구역	8.759	-	
	제2종구역	7.16	2	
	제3종 구역	구역계	73.669	31,321
		“가”지구	11.61	106
		“나”지구	22.564	5,633
		“다”지구	39.495	25,622
	합계	89.588	31,363	
김포 (‘10.10.8)	제1종구역	0.8	-	
	제2종구역	1.6	-	
	제3종 구역	구역계	22.2	27,221
		“가”지구	2.0	6
		“나”지구	5.8	5,113
		“다”지구	14.4	22,102
	계	24.6	27,221	
김해 (‘14.2.7)	제1종구역	1.2	-	
	제2종구역	0.6	2	
	제3종 구역	구역계	14.67	700
		“가”지구	1.7	28
		“나”지구	4.0	163
		“다”지구	8.97	509
	계	16.47	702	
제주 (‘12.12.27)	제1종구역	0.729	-	
	제2종구역	0.65	-	
	제3종 구역	구역계	9.559	3,306
		“가”지구	1.41	72
		“나”지구	2.774	357
		“다”지구	5.375	2,877
	계	10.938	3,306	
울산 (‘06.12.5)	제1종구역	0.02	-	
	제2종구역	0.17	-	
	제3종 구역	구역계	1.66	79
		“가”지구	0.27	-
		“나”지구	0.47	-
		“다”지구	0.92	79
	계	1.85	79	
여수 (‘06.12.5)	제1종구역	0.01	-	
	제2종구역	0.14	-	
	제3종 구역	구역계	1.38	5
		“가”지구	0.23	-
		“나”지구	0.42	-
		“다”지구	0.73	5
	계	1.53	5	
인천 (‘16.1.6)	제1종구역	6.0	-	
	제2종구역	4.0	-	
	제3종 구역	구역계	24.2	50
		“가”지구	6.0	-
		“나”지구	9.1	-
		“다”지구	9.1	50
	계	34.2	50	